

## 산학협력위원회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와 타 연구기관 및 산업체와의 교류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 전반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둔다.

**제2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본교 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③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,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는 산학협력단에서 관장한다.

⑤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산학협력팀장이 담당한다.

**제3조(회의)**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4조(분과위원회)**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.

**제5조(기능)**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본교와 타 연구기관 및 산업체와의 기술교류 및 공동연구 추진에 관한 사항
2. 본교와 타 연구기관 및 산업체와의 인적교류 및 기기 공동 사용에 관한 사항
3. 산업재산권에 관한 사항
4. 산학협력체결에 관한 사항
5. 취업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
6. 기타 국내·외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

**제6조(보고)**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7조(보칙)**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(2001. 1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3. 10. 6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7. 9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 2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5. 10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